

2024년도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등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 공고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등에서 근무할 공무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 12. 6.
국토교통부장관

1. 채용 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 신 분 : 공무직 근로자
- 채용 예정인원 및 주요업무 : 6명

○ 일반 전형

채용구분 (지역)	인원	주요업무	근무기관 (근무장소)
공무직 근로자 (과천 지역)	3명	• 국토교통부 대표전화인 민원콜센터 (1599-0001) 전화 및 온라인 상담	국토교통부 (과천정부청사)
공무직 근로자 (세종 지역)	2명	•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접수·배부 • 서면민원, 방문민원 응대 등	국토교통부 (세종정부청사)

* 채용구분(지역)별 중복 지원 불가

○ 장애인 전형

채용구분	인원	주요업무	근무기관 (근무장소)
공무직 근로자 (과천 지역)	1명	• 국토교통부 대표전화인 민원콜센터 (1599-0001) 전화 및 온라인 상담	국토교통부 (과천정부청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해당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일반 전형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2. 근로 조건

- 채용 예정 일시 : 2025. 2. 10. (월)
- 근로 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보수(기본급) : 시간급 9,860원(24년 기준 월 201만원 정도)
 - 공통수당 : 정액 급식비(월 14만원), 명절상여금(설, 추석 각 55만원), 근속수당(월 3만원, 2년차~11년차 매년 3만원 증가)
 - 성과수당 : 월 최대 15만원(단, 세종청사는 민원업무수당 5만원 지급)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6개월 이상 근무시 연 50만원), 4대보험 가입
 - * 수습기간 중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
-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제4항)

3. 응시 자격 및 가점 요건

기본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로서 공고일 현재 60세(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채용 신체검사 결과 이상 없는 자
- 장애인 전형에 응시하는 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 준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점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각 법률에서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인 해당여부 확인 필요)
-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아래 법률에 따른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1명)을 초과할 수 없음

<p>《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 가산점은 항목 간 중복 적용 불가,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4. 채용 절차 및 일정

공고 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4. 12. 6.(금) ~12.17.(화)	'24.12.6.(금) ~12.17.(화)	'24.12.19.(목) ('24.12.23. 홈페이지 공고)	'25.1.16.(목) (경부세종청사 6동 318호 예정)	'25.1.20.(일)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채용 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지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4. 12. 6.(금) ~ '24. 12. 17(화) 18:00
- 접수 방법 : 본 공고문에 첨부된 6가지 양식(①채용 지원서, ②자기소개서, ③공정채용 확인서, ④서약서, ⑤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⑥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을 작성한 후, 일괄스캔하여 채용담당자 메일(kamaksan@korea.kr)로 온라인 제출(우편·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p>※ 6가지 양식(제출서류) 작성·제출 시 주의사항</p> <p>가. 제출서류는 출력하여 서명/날인한 후 스캔하여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파일을 ①~⑥ 순서대로 스캔,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p>나. 메일 제목 및 제출서류 제목(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일명 : (전형구분)공무직 채용 지원서류 제출(지원자 성명) ** 전형구분은 ①과천 일반, ②세종 일반, ③과천 장애인 중 하나로 작성
--

6. 제출서류

제출 서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채용 지원서, ②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③공정채용 확인서, ④서약서, ⑤개인정보의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⑥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각 1부 	<p>채용 지원서 접수 시 제출</p>

제출 서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 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전임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면접심사 일까지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증명서 1부(장애인 전형 지원자만 해당)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각 1부 	

7.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통해 채용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합격처리

(평정요소) ①지원동기, ②직무수행 계획 및 갈등관리, ③관련경험 등의 직무연관성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 로 평정
 - ※ 상 : 20점, 중 : 15점, 하 : 10점
- 총점(면접 만점점수 100점+가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 모두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요소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해 위원 모두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의 경우 위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상”이 동일하면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 대로, “중”의 개수가 동일하면 서류심사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근로자 채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평정요소) ①국가기관 근무자로서 기본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협력적·적극적 자세 및 발전가능성

- 채용구분별 예정인원의 100% 내에서 예비합격자 선발
 - * 채용예정일(25.2.10)로부터 3개월(25.5.10)까지 연락 없을 시 예비합격자 자격 무효

8. 유의 사항

- 지원서 접수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전형 및 채용구분별 분할·중복 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

【별지 서식2】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성명		응시 분야	<input type="checkbox"/> 일반전형 과천 <input type="checkbox"/> 일반전형 세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전형 세종
----	--	-------	---

※ 한글타자(휴먼명조, 13pt, 검정, 줄간격 160%)로 최대 2매까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 전형 구분에 따른 업무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지원동기를 작성해 주십시오.

2. 위 전형 구분에 따른 직무수행 계획과 업무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 발생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3. 위 전형구분에 따른 업무분야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직무역량, 관련 자격증 및 관련 경험·경력 등 포함)를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별지 서식3】

공정 채용 확인서

국토교통부는 공정채용 확산과 채용비리 척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국토교통부 내에 친인척이 재직하고(□있음 /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의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음 / □없음)을 확인합니다.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 □없음)을 확인합니다.
4.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있음 / □없음)

연번	성명(본인)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본인과의 관계

본인은 우리 기관에 채용 시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하여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용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인)

2024년 월 일

작성 자 :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친인척의 범위(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2호 준용)

구분		0촌	1촌	2촌	3촌	4촌
본인	친가	부부	부모 자녀	- 조부모 - 형제 및 그 배우자	-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 형제의 자녀(조카)	- 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외가		-	- 외조부모	-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배우자	친가		부모	- 조부모 - 형제 및 그 배우자	- 백부, 숙부 및 그 배우자 - 형제의 자녀	- 백부, 숙부 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	- 외조부모	- 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 외백부, 외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별지 서식4】

서약서

- 주의사항 -

1.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채용지원서, 자기 소개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주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채용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로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접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공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